

---

**2023년 FTA 분야  
교육·홍보사업 지원계획 공고(2차)**

---

**2023. 5.**

# 1

## FTA 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계획(제2차)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·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
- 사업비 : 3,095백만원 (1차 선정액 1,169백만원, 잔액 1,926백만원)
- 사업주관기관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(FTA이행지원센터)
- 사업총괄과 :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
- 신청기간 : 2023. 5. 8.(월) ~ 5. 22.(월) 18:00까지
- 신청대상 : 지원 취지에 따른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·단체 및 민간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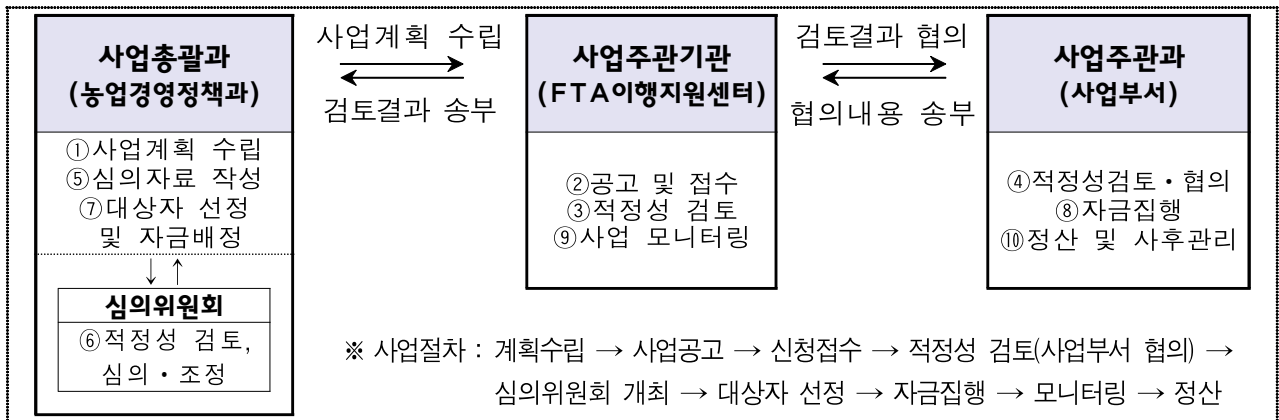
### □ 사업 주요내용

- FTA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농업인·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·홍보 지원
-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·홍보(책자, 신문, 방송 등) 지원
-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·워크숍·포럼 등 지원
- FTA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·외 현지 조사
- FTA 수출 확대를 위한 농산물·농식품 관련 농업인·농업단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
-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·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지원

### □ 신청 방법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
  -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support.krei.re.kr>)
- ※ 사업계획서 제출 후 필요시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
- ※ 담당자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(061-820-2315)

## □ 사업추진체계



## □ 사업추진일정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요 내 용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사업 공고 및 신청<br>(5.8.~5.22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업주관기관)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문 게시</li> <li>○ (사업시행자) 사업 신청기간 내,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사업주관기관에 제출(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)</li> </ul>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적정성 검토<br>(5.23.~6.5.)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주관과)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, 신청서 및 사업별 검토의견서를 사업총괄과에 제출</li> </ul>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심사평가<br>(6.5. 주간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업총괄과)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, 결과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</li> <li>- 1억원 이상 신청 사업 및 사업주관기관에서 발표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별도 발표평가 실시</li> </ul>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사업대상자 확정<br>(6.12. 주간)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업총괄과) 심의위원회 심의·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·통보</li> <li>- 심의 공정성·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세부계획 수립<br>(통보 후, 14일 이내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업시행자) 조정된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과와 협의·제출(e나라도움)</li> </ul>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자금 요청 및 배정<br>(수시배정)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금요청 : 사업시행자 → 사업주관과 → 사업총괄과</li> <li>○ 자금배정 : e나라도움을 통해 배정 및 집행</li> <li>-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e나라도움 설치 필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사업 추진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업주관기관) 총 사업기간 '2분의 1' 경과 시점에 사업 추진 상황 점검</li> </ul> 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<br>제출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업시행자) 사업 완료 후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사업주관과에 제출</li> </ul>  |
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사업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사업주관기관)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사업 선정시 반영</li> </ul>  |

※ 사업추진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1. 사업 주요내용

- ① FTA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농업인·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·홍보 지원
  - FTA 국내대책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,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·홍보사업 지원
-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
  -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,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·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(책자, 신문, 방송 등)
-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·워크숍·포럼 등 지원
  -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·지자체·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·포럼·워크숍 개최 등 지원
- ④ FTA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·외 조사
  -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·분석 등
  - FTA 체결국(협상국 포함)에 대한 농업·식품시장 조사·분석,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
- ⑤ FTA 수출 확대를 위한 농산물·농식품 관련 농업인·농업단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
  -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·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
- ⑥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·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지원

## 2. 사업대상자 선정 기본원칙

- 지원금의 용도 및 지원기준 이외의 사업은 지원 제외
  - 국회, 예산정책처,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은 지원 제외
- 예산·기금으로 기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
  - 다만,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
  - 유사 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하여 단순화
- 전국 단위의 사업을 위주로 우선 선정·지원
  - 사업의 파급효과가 전국 단위로 발생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되, 지역단위 사업은 지역적으로 특화된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
- 일회성이 강한 이벤트성 사업, 기관·단체 차원의 전시성 행사 및 시상식, 회원 중심의 행사 등은 제한적으로 선택·지원
  - 사업비 산정 시, FTA분야 교육·홍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부분(기념품, 시상금 등 선심성 또는 소모성 경비) 등은 감액·조정
- 운영비, 인건비 등 단순 경직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
  - 다만,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총사업비(지원금액) 중 5% 이내에서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원 가능
  - 인건비는 워크숍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진행요원 경비, 발표(토론)자 수당 등은 인정하되, 별도 직원 운용을 위한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
  - 다만,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가능
- 전년도 성과평가를 사업 심의에 반영하여 선정
  - 전년도 성과평가가 매우 미흡하여 사업주관기관에서 지원 배제를 요청한 경우 선정 제외
-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선정 우선 순위
  -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중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선정 우선 순위

### 3. 지원 분야 예시

| 사업지침 제3조(지원분야)  | 지원 사업 예시   |
|---|--|
| ① FTA 이행상황과 국내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·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·홍보 활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교육</li> <li>• FTA 투·융자지원 정책 홍보</li> <li>•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</li> <li>• FTA 체결국·품목별 대책 사업 홍보</li> </ul>  |
| ② FTA를 활용하거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FTA 대응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신문 기사 게재 및 방송 제작</li> </ul>  |
| ③ FTA 영향분석, 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·워크숍·포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우수사례 환류를 위한 세미나·워크숍·포럼 개최</li> </ul>   |
| ④ FTA 국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관련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FTA 체결국(협상국 포함)에 대한 농업·식품시장 조사·분석,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</li> </ul>   |
| ⑤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·농식품 관련 농업인 또는 단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FTA 대상국 관세 체계 및 시장 특성에 관한 교육</li> <li>• FTA 대상국의 수출 관련 법률 교육 및 컨설팅</li> <li>•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</li> </ul>  |
| ⑥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사업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·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FTA 피해 품목 관련 단체 교육 지원</li> <li>• 축산 등 피해 분야 역할 및 중요성 홍보</li> </ul> </li> <li>2.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·홍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 농업인(후계농, 청년농 등)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</li> <li>• 개방화 시대 대응 신성장 사업 관련 홍보</li> </ul> </li> </ol> |



【별지 제1-1호 서식】

## 사업계획서

1. 사업명 :

2. 사업시행자 :

3. 사업내용

- 사업목적 : 사업의 필요성 등 기술
- 사업기간 : ○○○○년 ○○월 ~ ○○○○년 ○○월
- 사업규모 : 사업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입
- 총사업비 :       천원 (지원금       천원, 자부담       천원)  
\* 사업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 중, 신청금액 외의 신청(기관)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자부담 비용 기재
- 사업수혜자  
\* 사업 수행을 통해 직·간접적인 수혜를 입은 대상을 기재
- 세부사업내용  
\*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로 작성하고 직접수행여부 명시

| 세부 사업   | 사업 내용   | 직접수행여부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프로그램  | ○지역별 맞춤형 순회 교육프로그램 3회<br>- FTA 국내대책, FTA 활용 교육, | 간접수행(교육전문<br>기관에 위탁) |
| 기획 기사   | ○FTA로 성공한 청년농 우수사례 기획기사 게재                      | 직접수행                 |
| 방송 제작   | ○FTA 활용을 통한 수출 우수사례 다큐멘터리 제작                    | 간접수행(방송촬영<br>업체에 위탁) |
| 워크숍/토론회 | ○FTA 관련 정책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                    | 직접수행                 |

○ 추진 일정 및 내용

| 추진 일정 | 추진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4월    | ○프로그램 기획 완성<br>○주요스텝 구성 완료           |    |
| 5월    | ○기초자료 및 해외 성공사례 조사<br>○국내 촬영 및 취재 시작 |    |

\* 추진 일정은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

○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

\*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 현황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작성

| 성명   | 직위   | 참여기간              | 참여율 | 세부 역할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ooo  | 대표   | 22.4.1.~22.10.31. | 30% | 사업 총괄                  |
| ooo  | 사무국장 | 22.4.1.~22.10.31. | 20% | 행사 관리, 홍보 관리 등         |
| ooo  | 대리   | 22.4.1.~22.10.31. | 20% | 사업 예산 관리 및 집행, 계획 수립 등 |
| 단기고용 | 단기고용 | 22.5.1.~22.6.10.  | 10% | 행사 진행요원, 참가자 관리 등      |

#### 4. 사업 기대효과

- \* 지원금으로 사업추진 후, 계량 또는 비계량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에 대한 직·간접적인 기대효과 기술

#### 5.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

- 지원근거
  - \*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법령, 공약, 시책 등을 기입
- 추진경위
  - \* 최초사업 시작년도, 그동안의 정책변화, 추진 배경 등 기술

#### 6. 사업추진 절차

- \*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(필요 시,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)

#### 7. 지원 신청금액 : 천원

- \* 신청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주관기관에서 발표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발표평가 실시(PPT 자료 인쇄 등 준비 필요)
-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교육·홍보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  
<○○○○사업>

(단위 : 백만원)

| 연 도  | 지원금액 | 집행액 | 불용액 | 이월액 | 비 고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합 계  |      |     |     |     | * 이월 및 불용 사유 등을 기재 |
| 0000 |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0000 |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0000 |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
- \*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육·홍보사업이 있는 경우, 사업별로 모두 기재

#### 8. 사업성과 평가 계획

- \*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(사업완료 후, 별도의 평가보고서 제출)

| 평가구분            | 평가방식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① 영상 콘텐츠 제작     | - 사업결과물의 향후 사용 및 관리방안 |    |
| ② IPTV, CATV 송출 | - 방송 채널 및 편성, 송출 횟수   |    |
| ③ 콘텐츠 확산        | - 유튜브, 네이버TV 영상물 조회 수 |    |
| ④ 시청자 설문지 배포    | - 연령별 시청자 설문          |    |

【별지 제1-2호 서식】

지원금 산출내역서

□ 사업명: FTA 대책 정보공유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·홍보사업

(단위 : 천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
| 지 원 금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홍보물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5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책자 : 2,000부 × 10천원 = 20,000천원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리후렛 : 3,000부 × 5천원 = 15,000천원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현수막 : 20개 × 50천원 = 1,000천원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신문광고   | 30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전문지 ; 10회 × 2,000천원 = 20,000천원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중앙지 : 10회 × 1,000천원 = 10,000천원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방송제작   | 70,00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지상파 : 10회 × 5,000천원 = 50,000천원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지역방송 : 20회 × 1,000천원 = 20,000천원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워크숍/토론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,70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발표수당 : 4명 × 300천원 = 1,200천원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사회자/매널수당 : 5명 × 300천원 = 1,500천원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장소임대료 : 4회 × 1,000천원 = 4,000천원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운영요원 : 10명 × 100천원 = 1,000천원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- 식비 : 100명 × 10천원 = 1,000천원 |  |        |
| 자 부 담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기타 비용  | 2,50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보험료 : 100명 × 10천원 = 1,000천원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사무통신비 : 500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차량운영비 : 1,000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사업운영비 : 7,760천원 (신청금액 중 5% 이내)               |        |
|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2,960(VAT 포함)(지원금: 152,700천원, 자부담: 10,260천원) |        |

※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신청 시, 신청금액의 산출내역은 적정성 등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,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내역은 감액·조정